

技術檢討의 是是 非非

技術士 金慶植
(機械部門)

目 次

1. 外資導入法施行令 第9條
2. 技術導入契約書
3. 技術導入契約 技術檢討 是是非非
 - 1) 一般的 姿勢
 - 2) 特許導入과 商標使用
 - 3) 簡單한 印象
 - 4) 困難한 問題
4. 技術檢討機關

1. 外資導入法施行令 第9條

韓國技術士會는 1967年 12月 「外資導入法施行令에 關한 建議書」를 當局에 提出한바 있다. 그의 内容은 外資導入法施行令(1966. 9. 24. 大統領令第 2756 號) 第9條(技術用役者の 檢討)에 있어서

1) 技術導入契約에 依한 認可申請書도 事前에 技術士의 技術檢討를 받아야 한다.

2) (但書에 依한 現金借款契約 또는 資本財導入契約으로 因한 技術檢討에 있어서)……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할수 없을 때에는 技術士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科學技術處長官의 意見을 들어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의 2個 建議事項이다.

그中 主로 言及하고 싶은 것은 第1項인데 그의 内容은 同施行令第9條는 現金借款契約 또는 資本財導入契約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技術士法(1963. 11. 11 法律第 1442 號), 第25條(技術士의 活用)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同施行令第3條(認可의 要件)의 事項에 關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이 指定하는 技術士(技術士를 雇傭

하는 技術用役者를 포함한다)의 技術檢討을 미리 받게 되어 있는데 外資導入法 第2條(定義)中에서 「外資」를 定義하고 있는 바와 같이 外資中에서 重要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技術導入契約에 依하여 導入된 技術」에 關한 技術導入契約에 對하여 技術檢討를 前記 同施行令第9條의 技術用役者の 檢討 對象에서 除外함은妥當하지 못하니 建議事項 1과 같이 이를 插入 修正補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至極히 當然한 것이며 當局에 依하여 善處되리라 믿는 바이다.

此際에 本件 技術導入의 契約에 關하여 重點을 두고 現在까지의 日淺한 經驗에서 본若干의 問題點을 들어 論述하여 보기로 한다. 于先 技術導入契約書의 規定條項例를 參考삼아 提示한다.

2. 技術導入契約書

技術導入契約書의 規定條項은 各社各樣이나一般的으로 技術提携契約(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技術援助 및 特許實施許與契約(Technical Assistance and Patent License Agreement,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또는 協定書等의 形式으로 技術提供者(Technical Adviser)와 技術導入者(實施者 Licensee)間에 契約되는데 그의 條項例는 別表1·2·3과 같은 것이다.

即 契約되는 大體的인 内容은 契約對象, 期間, 地域, 支拂代價 等의 定義 및 方法과 其他 制限 또는 關聯條項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別表 1. 技術提携契約書 (例 1)

(Technical Assistance & Patent License Agreement)

緒 文(Recitals)	
§ 1. 定 義(Defintion)	
1—1 契約製品(Contract Products)	
1—2 事業部(Department)	
1—3 特許(Patents)	
1—4 技術情報(Technical Information)	
1—5 技術情報의 範圍(Without Limitation Technical Information)	
§ 2. 技術情報 및 서비스 (Technical Information and Service)	
§ 3. 技術諮詢(Technical Consultation)	
§ 4. 特許(Patents)	
§ 5. 補償關係(Compensation)	
§ 6. 關係國政府法規(Government Regnulations)	
§ 7. 一般制限(General Limitation)	
§ 8. 導入者에 對한 部品輸出(Component Sales to Licensee)	
§ 10. 商標(Trademarks)	
§ 11. 通告(Notices)	
§ 12. 契約의 讓渡(Assignment of Agreement)	
§ 13. 適用法規(Applicable Law)	
§ 14. 契約總括 및 修正(Entire Agreement and Amendments)	

別表 2 技術援助 契約書 (例 2)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前 文(Preamble)	
§ 1. 契約期間(Term of Agreement)	
§ 2. 特許實施(Licenses)	
§ 3. 技術 및 製品에 關한 情報 (Technical and Manufacturing Information)	
§ 4. 商號(Name)	
§ 5. 支拂(Payments)	
§ 6. 技術提供者와 特許實施(Licenses to Technical Advisor)	
§ 7. 特許(Patents)	
§ 8. 第 3 者(Third Parties)	
§ 9. 部分品販賣(Sale of Parts)	
§ 10. 技術提供者와 特許實施 物品의 販賣 (Sale of Licensed Material to Technical Advisor)	
§ 11. 財產(Property)	
§ 12. 政府規定(Government Regulation)	

§ 13. 解約(Termination)
§ 14. 仲裁(Arbitration)
§ 15. 諸稅 및 公課金(Charges)
§ 16. 適用法規(Applicable Law)
§ 17. 讓渡(Assignment)
§ 18. 雜則(Miscellaneous)

別表 3. 技術 援助 協定 (例 3)

前 文
§ 1. 라이센스 賦與
§ 2. 라이센스 範圍
§ 3. 技術援助
§ 4. 部品의 供給
§ 5. 生產設備의 供給
§ 6. 品質維持
§ 7. 機密保持
§ 8. 商標
§ 9. 販賣地域
§ 10. 報酬
§ 11. 最低數量
§ 12. 特許
§ 13. 第 3 者와의 契約
§ 14. 違反
§ 15. 仲裁
§ 16. 協定의 非讓渡性
§ 17. 期間
§ 18. 發効
§ 19. 其他

3. 技術導入契約 技術檢討 是是非非

外資導入法第 2 條(定義)를 보면 「技術導入契約」이라 함은 大韓民國國民이 外國人으로부터 工業所有權 기타 技術의 讓渡, 그 사용에 관한 權利 또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인정하는 技術을 導入하는 契約으로서 그 條件이 代價의 支拂을 對外支拂手段에 의하고 支拂期間이 1年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고 規定지어 있는데 略述하면 外國人으로부터 工業所有權(即 特許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에 關한 權利)이나 技術的 know-how 를 導入하는 契約으로서 그의 代價支拂期間이 1年以上인 것

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同施行令 第 3 條(認可의 要件)을 보면 外資導入法 第 17 條 (現金借款契約, 資本財導入契約 및 技術導入契約의 認可) 第 1 項에 의한 技術導入契約에 대한 認可를 할에 있어서는 다음各號의 事項이 適合한가를 審查하여야 한다.

1. 導入의 必要性
2. 技術의 内容 및 方法
3. 技術導入의 代價
4. 契約期間
5. 經濟的 技術的 波及効果
6. 他同種業體와의 關聯性

이렇게 規定지어 있다.

即 契約內容檢討事項은 그 技術導入의 必要性 内容 그의 代價 契約期間 및 그로 因한 効果 等 을 審查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實質적으로 施行된 것이 얼마되지 않는다. 그 적은 經驗으로 이를 是非하는 것은 性急한 点은 있으나 若干이나마 參考될 点이 있으면 하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契約上の 問題點을 短片的으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 一般的姿勢

技術先進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은 後進國으로서는 必要不可欠한 것이고 如何히 하여 이를 迅速히 吸收消化하는가 하는 것은 國家發展에 重要한 要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導入은 當然한 權利이며 조금도 體面損傷이나 卑屈한 것으로는 看做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민저」란 競爭心으로 無秩序일 때는 이로 因하여 일어지는 實利보다 損失이 클 때가 있을 것이니 國家的調整은 免치 못할 것으로 본다.

一般的으로 볼 때 東洋의 美德이라고나 할까, 技術提供對象者에 對하여 지나치게 低姿勢인 것 같은 印象을 흔히 받게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give and take로 正當한 그의 代價를 支拂하고 있는 것이고 技術提供者도 그 外에 自己의 市場擴大 또는 據點마련 PR 等 그의 얻는 것이 또 있는 것이니 東洋의 스포츠觀念은 必要치 않은 것으로 보며 對等한 立場에서 互惠友好的으로 契

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對等去來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實施者의 國內에서의 位置(例를 들면 國內外特許權所有件數의 多寡) 企業의 歷史 市場佔據率 國內技術에서 차지하는 比重 等等인 것 같으며 그에 따라서若干의 程度差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特許導入과 商標使用

前述한 바와 같이 技術導入契約은 工業所有權과 know-how導入을 骨子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起起되는 問題點의 하나는 特許와 商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特許와 商標에 關하여는 互惠의이고 서로 保護한다는 根本精神은 萬國共通의 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각國의 法으로 規定되어있는 内容이 若干의 差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그나라 그 나라의 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韓國內에서의 特許權의 効力은 韓國特許法에 依하여 登錄된 것에 限하여 保護를 받을 수 있다. 韓國에서 特許되지 않고 外國에서 特許된 것은 韓國內에서는 特許權의 保護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萬若 外國人인 技術提供者が 韓國內에서 登錄된 特許가 없을 때에는 그는 [韓國內에서 누구에게도 特許에 對하여 專用實施(Exclusive License) 또는 通常實施(Non-exclusive License)를 출 수 없으며 그리고 實施料(License fee)를 徵收할 수 없음은勿論이거나 그가 韓國外에서 登錄한 特許라 할지라도 韓國內에서의 第 3 者의 實施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萬若 韓國內의 같은 對象에 對하여 特許된 特許權이 있을 때에는 前記 技術提供者が 韓國外에서 特許받은 事實은 問題가 되지 않으며 韓國內에서의 實施는 不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이 實施權問題에 對하여 國內法으로서 特히 參考할 것은 通常實施權者는 再實施(Sub-license)를 許與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는 韓國商標法으로서는 商標實施許與가 認定되어 있지 않으므로 導入者는 技術提供者的 商標에 關하여 實施登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技術提供者の 商標가 韓國에 登錄되어 있을 때 技術提供者が 導入者에 對하여 提供者の 商標을 使用함을 默認하거나 使用하게 하였을 때

에는 商標法 第 23 條(商標登録의 取消)에 依據 審判에 依하여 技術提供者自體의 商標의 登錄이 取消될 憂慮性도 있는 것이다.

即 國內法을 等閑視하면相當한 努力과 費用을 들여서 假契約한 것이 政府의 承認을 못받게 되고 (過去에는 그릇되게 認可된 일도 있지만)修正契約같은것을 다시 하게 되니 不必要한 時間과 費用이 過重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간혹 契約書中 「Licensed by ○○」란 用語를 「○○特許技術提携製作」으로 어렵게 翻譯하고 있는 수가 있는데 이는 危險千萬이다. 「特許」란 用語를 使用할때에는 韓國特許權을 明示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의 明示없이 ○○會社가 韓國內에서 技術提携한다는 것은 矛盾이 되고 紛爭끼리가 될 憂慮가 있는 것이다.

또한 國내에 特許權登録이 없는데도 不拘하고 Royality 를 特許權使用料云云으로 翻譯하고 있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正確한 解釋이라 볼수는 없다.

가끔 世界特許權이란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는 不當한 것으로 본다. 前述한 바와 같이 그 나라에서 特許된 것만이 그 나라에 限해서 獨占排他的인 權利가 있는 것이지 이는 他國에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즉 世界共通特許權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單只 여러나라에 同一한 對象으로 特許登録한 것은 각 그나라들에 있어서 權利가 있는 것이니 같은 權利를 여러나라에 亘하여 가지고 있다고 할 程度로 善意的으로 解釋안되는 바는 아니다.

近者 工業所有權에 對한 關心이 漸騰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는 企業人 研究人 學者 技術者 가림없이 보면서도 못보는 盲點일지도 모른다.

3) 簡單한 印象

어떤 契約書는 그의 規定條項 內容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적은 것도 있다. 많은 것은 그의 內容이 具體的으로 嚴格히 規定되어 있고 어마어마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感이 들고 條項內容이 적은 것은若干 어리숙한 것 같으면서相當히 友好的인 感은 받게 되는 수가

있다.

技術援助를 받는 側이 弱者인지 또는 어떤 時期後에는 強者가 될지는 簡單히 結論지을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恒常 自己에게 有利하게恣意性있게 解釋되게 하는 것이, 그리고 若干 餘裕가 있는 것이 어떨지 하고 印象받으면서도 導入될 技術內容의 明示 그리고 그의 定義의 正確 이것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感을 종종 받는다.

가끔 技術을 提供함에 있어서 받는 側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云云이란 序頭가 있는 것을 보는데 받는 側으로서는 有利하지 못한 方式인 것 같다.

契約期間에 있어서는 于先 短期로 하고 繼續延長시킬 수 있는 可能성이 있게 함이 有利하지 않을까, 특히 그 技術이 限定되고 特定의 것, (例를 들면 特定 Model에 限한 것)은 長期契約하면 어울한 代價를 長期支拂케 될 憂慮가 있지 않을까 技術은 發展되고 進步되는 것이기에 미리長期間 못을 박는 것은? 等等의 印象을 받는데 이는 煙急히 사들려서 契約하는 까닭에 그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困難한 問題

技術提携下에서 製造되는 製品의 性能 保障이란 問題가 종종 論議되는데 이는 前述한 施行令第3條의 認可要件에는 記載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製品의 性能이 重大한 結果를 주는 品種(例를 들면 保安裝置같은 것)에 있어서는 특히 그것은 國내에서 처음인 境遇에는 考慮되어야 할 点으로 본다. 勿論 그의 國내 Maker가 國내에서 同種部門에相當한 實績이 있고 技術面에도 優秀하다고 認定될때는 좋지만 實績이 없을 때는 그製品의 使用者를 保護하고 信賴感을 줄수 있는 方法이 있어야 할 것이다.

一方 이것을 技術提供者の 立場에서 볼 때, 그의 援助下에서 製造되는 製品의 性能을 保障하려면 그 實施者의 技術程度에 滿足할 수 없을 때에는 製品의 各 製造過程에서 各 作業에 使用되는 各 施設 및 部品 等의 檢查權 없이는 그를 保障하기는 困難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의 檢查權이 不合格時의 問題點이 發生되고, 또한 國產

化率을 沮害할뿐만 아니라 國內 實施者的 主導權이 劍奪되는 境遇가 되어 結局 保稅加工의 域을 免치 못하게 되는데 이 問題는一般的으로 概括的으로는 結論짓기는 無理하다. 性能保障과 檢查權 이것은 그의 程度와 限界를 Case by Case로 分析檢討하여야 할 困難한 問題點의 하나가 될 것이다.

製品輸出問題 이것도 困難한 問題의 하나가 될 것이다. 大體的으로 工業所有權에 對한 契約은 그의 權利가 設定登錄되어 있거나 將次 할것을前提로 하거나를 不問하고 그의 實施權設定에 對한 契約形態가 되는 것이 普通인데 거기에서 考慮할點은前述한 바와 같이 專用實施, 通常實施로 區分되어 있으니 그것을 確實히 하여야 한다는 點이다. 그리고 그의 契約내容은前述한 各種 契約書內容과 大差없으며 普通 特許發明의 實施에 對하여 期間, 場所 및 内容에 制限을 加하여 契約되게 되는데 特히 外國人과 일때는 實施할 地域에 制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地域을 韓國內로 限하게 되면 國外輸出은 制限받게 되는 것이다. 그의 製品이 外國 어떤 나라에 輸出될 때 (外國製品이 韓國內에 輸入될 때에도 같지만) 그 나라의 特許權에 抵觸 또는 侵害가 될 때에는 入國이 不許되며 잘妥協이 되드라도 그 나라의 特許權에 對하여 特許料의 支拂을 免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勿論 이는 技術提供者가 그나라에 그에 對한 特許權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또한 같은 것이다. 그러나 製品輸出에 關해서는 技術提供者는 別途의 契約을 맺고자 하는 것이고一般的으로 地域은 처음 定義條項에서 韩國內로 規定되는 수가 大部分인 것 같다. 技術提供者나 그의 導入者が 對等相互의 일 때에는 兩者の 【特許權이 미치는範圍內에서 서로 交換하는 所謂 Crosslicense 的】경우도勿論 흔히 있다. 그러나 特許權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地域이 지나치게 制限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이러한 問題도 難問題의 하나가 될 것이다.

4. 技術檢討機關

後述한바와 같이 外資導入法施行令 第9條(技術用役者의 檢討)에는 現金借款契約과 資本財導入契約만을 技術士法에 따라 技術士(기술士를 雇傭하는 技術用役者를 包含)의 技術檢討를 받게 되어 있을 뿐인데 實際는 技術導入契約의 大部分은 導入者가 技術士(기술檢討機關)의 檢討를 그 自體의 重要性과 會社의 必要性으로서 미리 받고 있으며 商工部도 告示第 2671號(1966·7·23)로서 指定한 檢討機關의 技術檢討를 받게끔 한바 있었다.

一部 實需要者는 各種 技術檢討에 있어서 實際로는 技術士檢討外에도 거쳐야 할 技術檢討機關이 많다는 不平이 가끔 있다. 法과 大統領令에 따라 政府가 認定한 技術士가 檢討한 然後에 또 다시 商工部는 商工部대로 科技處는 科技處대로 經濟企劃院은 또한 그대로 여러번 同一種類의 檢討가 重複되니 單一化할수는 없는가 하는 不平인 것 같다.

그리고 技術士의 檢討가 技術士만의 責任下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技術士가 屬하는 機關의 不可避한 壓力같은 것의 影響을 받을 要因이 介在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의 用役費自體가 導入者自體負擔으로 되어 있으니 導入者自身의 口味와 期待值에 비추어 差가 있으면 (그러한 檢討結果에 따라서는 事業自體의 認可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程度) 구태어 그의 貴重한 費用을 捏出않을 것이니.....等等의 여러가지 原因으로 檢討가 粉飾될 可能性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批評도 있었는데 如何間 是正되어야 할 點은 是正이 考慮되어야 하고, 單一化되어야 할 點은 單一化가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同時에 技術士의 檢討가 權威를 認定받고 또한 技術士自身의 倫理와 技術士의 地位向上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的인 技術檢討作業을 할 때 所要施設, 設備, 機器, 機材, 技術 等에 있어서 그의 具體的인 内容이相當히 明示되어 있는 것을 對象으로 하고 그의 技術的 妥當性을 檢討하게 되는데 作業後工

場建設段階에 이르러서는 果然 그 契約과 그 計劃된대로 導入되어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勿論 計劃, 調查, 研究, 設計, 試驗 및 評價等으로 用役業務는 分類될수도 있고 또한 過程의 分類로서 設計技術用役, 施工, 始運轉, 移動 等으로 必要에 따라 業務를 契約할 수 있는 것이고, 技術用役者가 性格上 또는 契約條件에 따라 施工 또는 監督을 맡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技術檢討한 者가 導入前에 技術檢討할 때의 內容과 實際 施工 또는 竣工時의 그 內容이 相異되어 몹시 마땅치 못한 점이 있다해도 技術檢討만 했으면 그만이지 그後의 것은 實際 되진 말건 그것은 導入者에 關한 責任所管事項이 吾不關으로 둘린다는 것을 After-service 的인 觀念으로 考察할 때 지나치게廻避的인 것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國家의 인見地로서는 竣工될때까지의 技術士의 確認制度같은 것도 必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될때가 가끔 있다.

以上으로 技術檢討에 關聯있는 若干의 問題點을 單片的으로 考察하여 보았지만 어쩐지 現段階에서는 公開가 되지 않는 또한 公開할수 없는

隘路點이 漏落되어 있는 反面 그다지 強調할 수 없는 點이 問題視된 感이 不少하다.

그러나 論及하고 싶은것은 韓國도 技術士가 있으니 技術士가 할 일도 많고, 또한 技術士를 活用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法律로서 定한 技術士法을 보면 이 法은 技術士에 對한 資格을 定하고 그 業務의 適正을 圖謀함으로써 科學技術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의 定義에서 「技術士」라 함은 科學技術에 관한 高度의 專門的知識과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能力을 요하는 事項에 관하여 이 法에 依한 資格을 얻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現在 輩出된 技術士가 4回에 亘하여 13個部門(그中 2個部門은 現在까지 合格者 없음)에 걸쳐서 164名이 있다.

技術士는 技術士대로 前記 目的을 為하여 如何히 할것인가를 恒常 銘心努力해야 할 것이고 國家는 國家대로 如何히 技術士를 活用하여 前記目的을 遂行케 하는가를 考慮해서 科學技術의 向上과 國民經濟에 寄與케 하여야 할것이다.

※ 筆者: 現 商工部 特許局 審查室長

創——祝——刊

現代產業의 發展은 研究開發로 부터 !



財團
法人

韓國科學技術研究所

住所: 서울 特別市 城北區 下月谷洞 山 5~47

電話 (93) 0763 · 4187 · 5454

臨時事務所: 서울 特別市 鍾路 2街 YMCA 빌딩 4 · 5層

電話 (75) 1461—65

所長

崔

亨

燮

副所長

申

應

均